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

①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개발 역량 (10)	연구개발투자 현황	5
	연구개발인프라 현황	5
공급망 기여도 (40)	생산 및 공급 역량	10
	부품산업 전환 기여	10
	지역 공급망 안정성 기여	10
	고용 창출 효과	10
환경정책 대응 (15)	기후위기 대응	10
	자원순환 역량	5
사후관리·지속성 (20)	정비망 구축 현황	6
	사후책임 지속성	6
	보급사업 지속성	8
안전 관리 (15)	전기차 화재 안전 대응 역량	8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7
합계		100

② 항목별 평가 기준

1. 기술개발 역량

1) 연구개발투자 현황 (5점)

-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전기차 관련 차량 및 부품, 배터리 등의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수행한 연구개발에 투입된 금액 기준

구분	배점				
	5	4	3	2	1
승용	500억 이상	500억 이하 ~100억 이상	100억 이하 ~50억 이상	50억 이하 ~5억 이상	5억 이하
승합·화물	200억 이상	200억 이하 ~50억 이상	50억 이하 ~10억 이상	10억 이하 ~3억 이상	3억 이하

※ 해외 제작사가 국내에 직접 설립한 법인(자회사 또는 한국지사)이 사업 수행자일 경우, 본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투자 실적을 국내 법인의 실적으로 인정함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에 대해서는 동 항목의 최대 점수(5점)를 부여함

2) 연구개발인프라 현황 (5점)

- 전기차의 핵심 성능 시험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소 및 필수 시험설비 보유 여부

구분	배점				
	5	4	3	2	1
보유여부	-연구소 보유 -필수 시험설비 5개 이상 -법적 최소인원 200% 이상	-연구소 보유 -필수 시험설비 4개 이상 -법적 최소인원 150% 이상	-연구소 보유 -필수 시험설비 3개 이상 -법적 최소인원 100% 이상	-연구소 보유 -필수 시험설비 2개 이상 -법적 최소인원 100% 이상	-연구소 보유 -필수 시험설비 1개 이상 -법적 최소인원 100% 이상

-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② 최소인원이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연구인력 기준
 - ③ 필수 시험설비란 차대동력계, 환경풍동시험설비, 저온환경챔버, 충돌시험설비, NVH시험설비, 전자파 적합성 시험설비, 모터/파워트레인 다이아노모, 배터리 안전성 시험설비(‘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동 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위한 시설), 배터리 팩/모듈 충·방전 시험 설비 등을 말함
-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 항목의 최대 점수(5점)를 부여함

2. 공급망 기여도

1) 생산 및 공급 역량 (10점)

- 전기차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 현황

구분	배점		
	10	5	3
국내 전기차 생산설비 운영	국내 전기차 생산 양산라인 운영 중	국내 CKD, SKD 조립 공정 운영	국내 생산설비 없음

- ① 전기차 생산은 차량 차체, 도장, 의장, 최종조립, 검사 등을 포함한 완성차 조립 공정을 의미
 - ② 단순 PDI(Pre Delivery Inspection) 센터나 물류센터 등은 생산설비에서 제외
- ※ 단,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정책 이행을 통해 지역 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동 항목의 최대 점수(10점)를 부여함

2) 부품산업 전환 기여 (10점)

- 국내 부품업체 전기차 전환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협력 현황

구분	배점		
	4	2	1
공동 연구개발 투자 규모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분	배점	
	3	1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	5건 이상	5건 미만

구분	배점	
	3	1
공동 연구개발 부품 적용 건수	유	무

- ① 최근 5년간 국내 부품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한 전기차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한함
- ② 공동개발 계약서 또는 과제협약서 제출 가능하고, 국내 부품업체 참여 확인이 가능, 결과보고서·중간보고·산출물 중 1개 이상 존재해야 함.
- ③ 동일 과제를 월별 또는 단계별로 나누어 산정 불가

3) 지역 공급망 안정성 기여(10점)

-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지역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하는 정도

구분	배점				
	10	8	6	4	2
조달 비중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 ① 국내조달비중(%)는 (∑국내조달부품가액 ÷ ∑전체부품조달가액) × 100
- ② 핵심부품(바디, 모터, 인버터, 감속기, 배터리 등) 가중치 1.5배, 일반부품(현가부품, 조향부품, 제동부품, 내장재, 외장재 등) 가중치 1배
- ③ 배터리에 한하여 국내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셀을 사용하거나, 국내 공장에서 배터리 팩을 최종 조립한 경우 배터리 전체 가액을 국내 조달 실적으로 인정
- ※ 제조사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적용한 부품이거나, 부품 공급사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내 본사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의 해외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공급되는 부품도 국내 조달 실적으로 인정
- ※ 판매모델별로 각 모델별 조달 비중을 작성하여 제출

4) 고용창출 효과 (10점)

- 국내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 현황

구분	배점				
	10	8	6	4	2
고용 인원	300인 이상	20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미만

- ※ 최근 3개월 이상 4대 보험 가입자 기준

3. 환경정책 대응

1) 기후위기 대응 (10점)

- 전기차 제조시 탄소배출량 평가

구분	2.5점 이상	2.0점 이상	1.5점 이상	1.0점 이상
배점	10	8	6	4

- ① 전기자동차 제조시(차량의 최종조립국) 탄소배출량 평가 점수 산출 방법
탄소배출량 평가 점수 = (모델A 판매대수×제조국그룹 + 모델B 판매대수×제조국그룹) ÷ 총 판매대수
- ② “각 모델별 판매대수 × 제조국 그룹 점수”의 합계를 총 판매대수로 나누어 기초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간별 가점을 부여
※ 예) A모델 5천대(2그룹), B모델 1만대 (2그룹), C모델 3만대 (3그룹)을 판매하는 보급사업 수행자의 탄소배출량 평가 점수 = (3×5000+3×10000+2×30000) ÷ 45000 = 2.33
- ③ 국가별 전력 배출계수(gCO₂/kWh)를 기준으로 1그룹(300gCO/kWh 이하), 2그룹(400gCO/kWh 이하), 3그룹(500gCO/kWh 이하), 4그룹(500gCO/kWh 초과)으로 구분
- ④ IEA database, 2024년 기준 적용

2) 자원순환 역량 (5점)

- 차량 제조 전 과정의 탄소발자국 저감을 위한 저탄소·재생 소재 적용 현황과 폐배터리 및 핵심 부품의 회수·재활용 체계 등 자원순환 관리 역량

	내용
저탄소·재생 소재 적용 현황	저탄소·재생소재의 차량의 적용 수준·범위
	재생소재 적용으로 인한 탄소 저감 수준
	소재 도입의 지속성 여부

	내용
배터리·부품 재활용 또는 회수 관련	배터리 및 주요 고전압 부품 회수·분류·진단·처리 기준 여부
	배터리·부품 회수·재활용 실제 운영 실적

4. 사후관리·지속성

1) 정비망(A/S 센터) 구축 현황 (6점)

구분	배점		
	6	4	2
승용·소형화물	직영 15개소 이상 또는 협력 30개소 이상	직영 10개소 이상 또는 협력 20개소 이상	그 외
구분	배점		
	6	4	2
승합·중대형화물	직영 3개소 이상 또는 협력 15개소 이상	직영 1개소 이상 또는 협력 10개 소 이상	그 외

- ① (직영) 전기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건물(토지) 매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토지)대장, 사진첩(외부 및 내부 전경) 등을 제출해야 함
- ② (협력)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된 자와의 계약을 통해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계약된 “자동차정비업자”의 현황정보(사업자명, 주소) 및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③ 자동차 제조사(이하 “원 제조사”)로부터 전기차를 구매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제작·판매하는 특수장비차량 제조사가 원 제조사와의 A/S센터 이용에 관한 업무협력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 제조사와 동일하게 평가

2) 사후책임 지속성 (6점)

-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후 피해(사고·결함 등)에 대한 보장여부와 전담 조직 운영 현황, 보조금 지원 대상인 전기차의 주요 부품의 보유 및 A/S 공급 가능 기간

구분	배점		
	6	4	2
사후책임	- 사고 관련 보험 가입 1건 이상 - 전담 조직 운영 - 부품 공급 가능 기간 10년 이상	- 사고 관련 보험 가입 1건 이상 - 전담 조직 운영 - 부품 공급 가능 기간 5년 이상	- 사고 관련 보험 가입 1건 이상 - 전담 조직 운영 - 부품 공급 가능 기간 5년 미만

- ① 사후 피해 보장이란 제조물 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리콜 비용 보험, 화재안전 보험 등 사고 관련 보험 가입 여부를 말함
 - ② 전담 조직이란 고객 민원을 응대하기 위한 고객상담센터를 말함
 - ③ 부품 공급 가능 기간이란 제조사가 A/S를 위해 전기차 부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말함
- ※ 보험가입증서, 고객상담센터 운영 계획서(운영 매뉴얼) 및 관련 조직도 등 제출
- ※ 자동차 제조사(이하 “원 제조사”)로부터 전기차를 구매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제작·판매하는 특수장비차량 제조사의 경우, 원 제조사의 기준을 준용함. 단, 특수장비차량 제조사가 추가하거나 개조한 부문에 대해서는 A/S부품 공급 가능 기간을 분리하여 평가함.
- ※ 각 배점별 지표 모두 만족시 배점 부여

3) 전기차 보급사업 지속성(8점)

구분	배점		
	8	5	2
수행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 ※ 보급사업 지속성은 국내 보급사업 수행기간으로 하되 보급대상평가 시험을 완료한 최초일부터 공고일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5. 안전관리역량

1) 전기차 화재 안전 대응 역량 (8점)

-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내부 관리 규정 유무
- 배터리 안전 관리 및 사고·화재 대응 매뉴얼 유무
- 전기차 결함·리콜 시 내부 대응 및 품질 문제 해결 프로세스

2)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7점)

- ISO/SAE 21434(자동차 보안기술 표준), UNECE R156(OTA 업데이트 보안), UNECE R155(차량 사이버보안 규제) 등 차량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 여부
 - 차량 원격관리, 보급사업 관련 정보 등이 저장 및 운영되는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 및 데이터 보호 등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 관리 체계의 적정성 여부
- ※ 자동차 제조사(이하 “원 제조사”)로부터 전기차를 구매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제작·판매하는 특수장비차량 제조사의 경우 원 제조사의 결함·리콜 대응 프로세스, 전기차 화재 안전 기준,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 등을 준용함. 단, 특수장비차량 제조사가 추가하거나 개조한 부문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평가함

3) 감점 기준 (최대 2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감점사항	보급사업 추진절차 미준수	10
	시정 또는 조치요구 미이행	10

1) 보급사업 추진절차 미준수

구분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배점	10	8	6

- ① 보급사업 참여 업체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보급사업 추진 절차를 제작사 또는 수입사의 귀책사유로 미준수한 사실이 기후부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확인을 통해 인정된 경우 감점을 부여
- ② 미준수 건수는 모델별 기준으로 산정

2) 시정 또는 조치요구 미이행

구분	2건 이상	1건 이상
배점	10	3

※ 보급사업 참여 업체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보급사업 참여 업체가 기후부 및 한국환경공단의 시정 또는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